

# 공동산림사업 협약서

서부지방산림청장, 함양군수는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산양삼 종자 품종등록 등 산양삼 연구 및 산업육성을 위한 「함양 산양삼 생산 시범단지 공동산림사업」의 시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함양 산양삼 생산 시범단지 공동산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부지방산림청장(이하 “갑”이라 한다), 함양군수(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 ① “갑”은 「함양 산양삼 생산 시범단지 공동산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국유림을 제공하고,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하여 운영한다.
- ② 해당 사업종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 ③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협약서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3조(대상지 및 협약기간)

- ① 협약 대상지는 산림청 소유 국유림으로 경남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산95번지, 22ha로 한다.
- ② 본 협약에 따른 “을”의 토지에 대한 사용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간이며 (2023. 11. 01. ~ 2033. 10. 31.), 협약기간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수행자의 의무)

- ① “을”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본 시설의 설계, 자금조달, 공사, 관리 및 운영,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 및 기타 본 협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③ “을”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사전에 “갑”에게 승낙을 받아야 하고 형질변경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복구방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산림복구하고 “갑”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업결과의 제출 및 수익배분)

- ① “을”은 매년 연구사업 계획을 다음해 1월 말까지 “갑”에게 제출하고 그 성과 결과를 같은해 1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구목적 외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을”은 그 결산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갑”에게 제출하고 사업수익의 배분 비율은 “갑” 1할, “을” 9할로 한다(사업 수익은 매출금액을 적용한다).
- ③ “갑”은 제2항에 의거 제출된 결산서를 근거하여 제2항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여 정산·처리한다.

제6조(기부채납) “을”은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설과 운영설비를 공동산림사업의 완료와 동시에 국가에 기부하고, “갑”은 이를 채납하여 귀속시킨다. 다만,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보험가입)

- ① “을”은 본 사업의 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본 협약 또는 연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각종 보험에 가입하거나 시공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을”의 책임으로 제3자에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갑”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조건은 동종 보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내외 보험의 조건으로 한다.

#### 제8조(업무협의)

- ① “갑”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을”의 업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을”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한다.
- ② “갑”과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9조(협약해지 등)

-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을”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2. 공동산림사업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양도하였거나 해당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이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행하도록 한 경우

4. 부도·법정관리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중단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해당 국유재산을 계획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산림청장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
7. 연구목적을 위한 공동산림사업의 시험·연구·실연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소홀히 한 경우
8. 공동산림사업수행자가 협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9. 기타 공동산림사업수행자가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② 협약체결 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저촉되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협약의 효력)

- ①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라 사업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을” 은 사업별 필요한 승인·인가·허가 등을 이행한 후 “갑” 에게 통보하여야 본 협약서의 효력이 유지된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 이 서명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3년 10월 26일



**함양군**

군수 진 병 영

진 병 영



**서부지방산림청**

청장 정 종 근

정 종 근